

울산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1244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 6. 24. 접수 제1060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표>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C는 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1	2017. 12. 7.	500,000,000	500,000,000	기업은행 외동공단지점	2020. 11. 4.	503,407,649
2	2018. 8. 28.	270,000,000	300,000,000	E은행 북울산지점	2020. 11. 4.	272,162,028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1) D은 2020. 7. 20.경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합계 775,569,6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위약금 중 미회수된 잔액은 887,670원이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D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2,055,712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

한편, C는 2020.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2020. 6. 24. 접수 제10601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채무 외에 (주)F에 341,906,414원, 기술보증기금에 916,750,000원, G은행에 4,273,582,000원 등 합계 6,963,564,0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가 4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기관,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D를 대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 북구
 동
 [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9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호 104.8541㎡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울산 북구 대 54793.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4793.5분의 52.7197

--- 이 상 ---

